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06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 손명수 · 한민수 · 김한규

남인순 · 정태호 · 김원이

이연희 · 박 정 · 이건태

김현정 • 이기헌 • 송기헌

김선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사전에 목적지·일시·경로 등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운행기록증 제도는 불법 지입(개인소유 버스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현행법상 개인에게는 전 세버스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명의가 필요한 차주와 수수료를 받는 전세버스 사업자 간 이면계약을 통한 지입 영업이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및 사후 단속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차체가 큰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전면에 부착되는 운행등록증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전자식 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됨.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저감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항 삭제등).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1항제20호의5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⑨ (현행과 같음) ① ~ ⑨ (생 략) ⑩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삭 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 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운행 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 당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 록증 발부・부착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1. 운행 일시 · 목적 및 경로 2.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 자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1조제10항에 따라 운행 < < 제>

기록증을 붙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된 운행기간 중 해당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 제85 부장관, 시 · 도지사(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 수 · 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 제 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 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0의4. (생 략) 20의5.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

85소(면허취소 능) ①
<u>.</u>
1. ~ 20의4. (현행과 같음)
<삼 제>

역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운행기록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 행한 경우

20의6. ~ 41.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지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 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6. ~ 8. (생략)

②・③ (생 략)

20의6.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u> </u>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